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7년 3월 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2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2. 28(화)	담당부서	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신산업진흥과
담당과장	이진광 과장(044-203-5160) 허정수 과장(044-203-5390)	담 당 자	권영희 서기관(044-203-5170) 이기헌 사무관(044-203-5166) 안재훈 사무관(044-203-5391)

◈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◈

- 지자체, 입지, 투자, 환경 등 핵심 부문별 총 7건의 규제개선 -
- '17년 5,600억원 투자유발, 110억 원 비용절감 기대 -

1. 추진 배경

□ 정부는 **지난 7월 「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」, 11월 「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」 발표** 이후,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.

○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**"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"**을 위해,

- 기업 애로사항 전수조사('16.12) → 전문가 등과 개선안 도출('17.1) → 관계부처 협의('17.1~2)를 거쳐,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(2.27)에서 부처·지자체 등 협의가 필요한 **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**했다.

< 대 책 >

【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】
· RPS 의무비율(%) 상향조정
* '18년 4.5→5.0, '19년 5→6, '20년 6→7

【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】
· 장기 고정가격(SMP+REC) 계약제도 도입
· 주민참여 활성화, · 입지/환경규제 완화
· 계통접속 애로해소, · 주택/학교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

→

< 후속 조치 >

①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 공청회(12.14)
② ESS 활용 스마트홈 컨퍼런스(12.14)
③ 학교 옥상태양광 현장 방문(12.16)
④ 산단 입주기업 대상 ESS 설명회(12.19)
⑤ 에공단-농협 농촌태양광 MOU 체결(12.23)
⑥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투자 포럼(12.27)
⑦ 에너지신산업 금융·투자 간담회('17.1.4)
⑧ 정부-지자체 정책토론회('17.1.10)
⑨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상정('17.2.27)

2. 규제개선 협의결과

□ **지자체·투자·입지·환경 등 총 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** '17년 5,600억 원의 투자유발 및 11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.

① **(지자체 규제)**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~1,500m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계속 증가해 45개에 이르고 있어 입지확보가 곤란하였으나,

- 이격거리 규제를 **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**하도록 산업부·국토부 공동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여 **3월부터 일괄 정비를 추진**하기로 했다.

- 이에 따라, **보류 중이던 약 210개 태양광 프로젝트(약 1,150억 원 규모) 추진**이 가능해 업계 숙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② **(환경 규제)** 풍력단지 개발 중 생태·자연도 등급이 2→1등급지로 변경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 기간이 15일에 불과했으나, 이를 **45일 이내로 현실화하기로 했다.**

- 또한, 환경부와 협의해 **풍력 현안프로젝트**를 중점평가사업으로 분류하고 **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조사**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.

- 아울러, 개별사업자가 각종인허가 획득까지 풍력입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**산업부·환경부 특별팀(TF)에서 계획입지제도**와 같은 대안을 찾기로 했다.

③ **(입지 규제)** 농촌 태양광은 1차 수요조사 결과, 288개 농가(87MW)가 신청하는 등 관심과 호응이 높으나,

-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(공시지가 30%)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.

- **농지보전부담금 감면(50%, '17년 60억 원)으로** 농민들의 농촌 태양광 사업 참여시 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④ **(투자)** 보험업계는 신재생사업과 같은 장기투자처를 선호하나 도로, 항만과 같은 민간투자사업만 투자위험이 낮은 사회간접자본(SOC)으로 분류하고 신재생사업은 투자 위험을 높게 적용해 투자확대가 곤란한 실정이다.

- 하반기부터 장기고정가계약이 체결된 신재생사업을 사회간접자본(SOC)과 같이 투자위험을 낮게 적용해 **보험업계의 신재생 투자여력을 확대**할 계획이다. ('17년 4,200억 원)

- 한편, 배전선로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에 에너지저장장치(ESS)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**한전의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(ESS) 투자를 유도**할 계획이다. ('17년 250억 원)

⑤ **(비용저감)** 사업장별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두는 대신 **안전관리자 1인이 다수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**해 전기충전 서비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

- 신재생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(ESS)를 설치해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**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** 연내 개선할 계획이다.

□ 작년 11월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이후 장기고정가계약이 체결한 신재생사업이 12건, 147MW('17.1~2월)에 이르고 있으며,

○ **작년 동기대비 2.2배 증가(태양광·풍력기준 3배)**했고 3월에 태양광 입찰시장이 열리면 장기고정가계약 체결 건수는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.

○ 이밖에도 계통접속 요구증가로 대기물량이 2GW를 넘는 등 가시적 성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,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신재생보급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○ 또한, 제주도와 주민참여사업에 대하여 이익공유제(풍력사업자가 수익의 17.5%를 제주도에 납부)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.

3. 규제개선 주요내용(참고)

【 지자체 규제 】

1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

<사례> A사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, 기초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러 갔으나, **도로·주거지역 등과의 500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*에 부적합**하다며 불허 통보를 받음

*국토계획법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(국토부 훈령)에 근거, 지자체 훈령·예규·조례에서 규정

○ **(개선방안)**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는 **"원칙 폐지 또는 최소화(예: 100m 이내)"**하도록 산업부·국토부 공동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여 **3월부터 일괄 정비에 착수**하기로 함.

○ **(기대효과)** 지자체의 이격 거리 제한으로 보류되었던, **총 210여개 (67MW, 약1,150억 원 규모) 프로젝트 활성화**

【 환경 규제 】

2 생태·자연도 등급 상향시 이의신청기간

<사례> B사는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고 준비하던 중, 확보된 부지가 생태·자연도 1등급지로 상향조정되었다고 공고되어 이의신청을 하려고 했으나, **지자체에 이의신청서 송부 후 지자체에서 국립생태원에 통보하기까지 이의신청기간이 15일***로 짧아 이의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

* 근거: 생태자연도 개정 고시 공고문안

○ **(개선방안) 이의신청기간을** 45일 이내로 연장하여 충분한 의견 소명의 기회 부여(환경부, 공고문 개정 '17.3월)

【 입지 규제 】

3 태양광 농지보전부담금 감면

<사례> 농촌에 거주하는 C씨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**농촌 태양광**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, 사업 참여시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**공시지가의 30%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**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상황

* 농지법 시행령 제52조(농지보전부담금 감면) 별표2: 국가·지자체의 공용·공공용 시설이나 농·어업용 시설 등은 50% 또는 100% 감면대상

○ **(개선방안) 농촌 태양광(농업진흥지역 밖)을 50% 감면대상에 포함**(농식품부,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'17.하반기 농지법 시행령 개정)

○ **(기대효과) '17년 농촌 태양광 100MW 보급시 약 60억 원 감면**

* 100kW 태양광 설비(400평=1,320㎡)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은 약 6백만원 감소(개별공시지가 3만원인 경우, 1,188만원→594만원)

【 투자 규제 】

4 신재생을 사회간접자본(SOC)금융에 포함

<사례> D 보험회사는 장기고정가계약제도 채택으로 안정성이 높아진 신재생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려 했으나, **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SOC금융은 도로 등 민간투자사업에만 국한**하고 있어, 신재생 프로젝트는 높은 위험계수가 적용되므로 투자여력을 늘리기 어려웠음

*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: 민간투자사업만 SOC금융으로 분류(낮은 위험계수 적용)

○ **(개선방안) 장기고정가계약제도를 채택하는 등** 위험도가 낮아진 신재생 프로젝트는 **사회간접자본(SOC)금융으로 인정**(금감원, '17.상반기 시행세칙 개정)

* 위험계수: 일반금융(대출 6%, 지분투자 12%) → SOC금융(대출 3%, 지분투자 6%)
* 지급여력비율 = 보험사 가용자본 / 총 리스크(프로젝트별 위험계수를 대입해 산정)

○ **(기대효과)** 사회간접자본(SOC) 금융 인정시 흥국생명·교보생명 등 5대 보험회사에서 '17년 신재생 부문 **투자여력을 4,200억 원** 추가 확대할 계획

5 배전사업자 에너지저장장치(ESS) 설치근거 마련

<사례>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(ESS)를 설치하면 신재생 확산에 따른 계통접속 부담완화, 최고(피크) 저감 등에 기여할 수 있으나, 그동안 에너지저장장치(**ESS)가 배전선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설비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** 배전사업자가 설치를 유보

*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,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(고시)

○ **(개선방안)**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(고시)에 한전의 에너지저장장치(ESS) 설치근거 마련(산업부 전력산업과, '17.3월 고시 개정)

○ **(기대효과) 대규모 투자('20년까지 2,000억원)**를 통한 ESS 시장 확대

* 한전 투자계획: ('17) 250억원(24MWh)→('18) 400(20)→('19) 600(60)→('20) 750(80)

【 비용 저감 】

6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

<사례1> 태양광 업체인 E사는 원격으로 전기안전 상태감시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, **1MW 이상 설비는 상주 안전관리자를 고용**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는 상황

<사례2> 전기충전 서비스 사업자는 **사업장별로 1인의 안전 관리자**를 두게 한 **현행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**으로 인한 **경제적 부담 가중**

* 안전관리자 선임(대행)비용 : 통상 1개소(100kW)당 연간 120만원 소요
*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등

○ **(개선방안)** 원격관리가 가능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상주고용 기준을 3MW로 상향, 전기차충전시설은 안전관리자 1인이 다수사업장 겸임 허용('17.하반기, 전기사업법시행규칙·시행령 개정)

○ **(기대효과)** 태양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 '17년 50억 원* 절감

* 태양광 : 발전소당 3,300만원 경감(상주→대행업체) * 300여개 발전소

7 역전력계전기 설치규정 명확화

<사례> 현행 역전력계전기 설치규정에는 **순수 자가 소비**에 대한 **역전력계전기 설치의무 규정만 존재**하고 있어 신재생과 연계된 ESS를 설치하여 **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**하는 경우 **역전력계전기 설치필요 여부**에 대한 **현장 혼선**

* 신재생연계 에너지저장장치(ESS)를 설치하여 사용전 안전검사를 득한 후 역전력계전기를 탈착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사례 발생

* 신재생·에너지저장장치(ESS)의 발전·저장전력이 한전 계통으로 보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
*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3조 제3항(고시)

○ **(개선방안)** 잉여전력 거래시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유권해석 등 우선 조치하고,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'전력설비 판단기준' 고시 개정(산업부 전력산업과, '17.하반기)

○ **(기대효과)** 역전력계전기(500만원/대) 설치비 경감 및 현장혼선 완화

□ 이밖에도 환경부와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풍력사업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제주도와 주민참여사업에 대하여 이익공유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참고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이진광 과장(☎ 044-203-5160), 허정수 과장(☎044-203-5390), 권영희 서기관(☎ 044-203-517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